교원 승진임용 시행세칙

2016.11.4. 제3차 개정
2012.1.1.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 학년도 4월 1일 또는(과) 10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승진의 종류) ① 일반승진 : 일반 승진 소요기간에 따라 평가를 받고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승진 : 탁월한 직무 수행 및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총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평가 심의를 통해 조기 또는 특별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승진 심사 신청 자격) ① 전임교원은 직급별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하면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016.11.4.>
2. 조교수(정년트랙) : 4년 <개정 2016.11.4.>
3. 부교수 : 5년

단, 병가 또는 일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신청 자격 취득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현 직급 임용기간의 1/2 이상을 초과한 경우 1회의 범위 안에서 조기 승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1.4.>[제7조로 이동<2016.11.4.>]

④ <삭제 2016.11.4.>[제7조로 이동<2016.11.4.>]

⑤ <삭제 2016.11.4.>[제7조로 이동<2016.11.4.>]

제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심사 신청이 제한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징계처분으로 1년 이상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라. 경고 2회 이상 3개월
3.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하여 교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입증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4. 현 직급 임용기간 내 연속 2회 이상 전체 전임교원 업적평가(개인영역)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 익년도부터 3년 동안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5. 현 직급 임용기간 내 강의평가 점수가 3회 연속 평균 3.2점에 미달할 경우 익년

도부터 3년 동안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11.4.>

6. 도덕적·형사적 사유에 의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6.11.4.>

②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장관급 이상의 표창 등 징계를 상쇄할 만한 특별 업적이 있을 경우 승진 신청자격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승진임용 신청) 제3조에 따라 승진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2조에 제시된 승진 예정일 3월 전(12월말, 6월말)까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승진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7조(승진 대상자 평가) ① 승진 심사는 승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사 대상 실적은 승진예정일 3월 전(12월말, 6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6.11.4.>]

② 승진 심사대상자의 실적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16.11.4.>]

③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경우에도 승진대상자는 최종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6.11.4.>]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승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연구실적의 환산 및 심사는 교원인사관리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4.>

⑤ 승진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개인평가지표(80%)와 대학평가지표(20%)로 구성된다. <개정 2016.11.4.>

⑥ 개인평가지표는 개인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개인필수평가지표(20%)와 개인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개인자율성과지표(80%)로 구성된다. <개정 2016.11.4.>

⑦ 대학평가는 학과(부)장, 처장, 총장 등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3.12.6., 2016.11.4.>

⑧ 처장급 보직자의 경우 해당보직 재직기간 중의 실적평가는 총장 평가로 대체한다. <개정 2013.12.6., 2016.11.4.>

제8조(승진 대상자 선정 및 추천) ① 교원인사위원회(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승진자를 선발, 추천한다.

② 승진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급 내 개인필수이행지표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자율성과지표 취득점수의 1/2이 부교수 승진자 85점 이상, 교수 승진자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추천된 승진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10조(이사회 의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승진 임용추천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이 확정된다.

제11조(승진탈락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승진 탈락 교원에게는 승진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② 승진심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승진 탈락 교원은 승진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3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12조 <삭제 2013.12.30.>

제13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 수행실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경우 직급 내 재직연한에 상관없이 특별 승진대상이 될 수 있다.

1. 교원업적평가 모든 영역별로 상위 20% 이내의 업적을 현직급에서 부교수 3년, 조교수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
2. 보직 수행 등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경우
3. 직무 수행 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금이나 대학발전기금 등을 유치한 경우
4. 기타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승진은 총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추천을 받은 교원은 추천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활동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개인 공적 및 총장 추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결격사유) <삭제 2016.11.4.>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2년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단, 2012년 이전 임용 교원은 본 규정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2. 지표는 직급 내 실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위원회 활동은 발표일 이후 실적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 <개정 2016.11.4.>

소 속			
성명			
최초임용일			
현 직 급		현직급 임용일	
임용기간 內 휴직기간	~		
임용기간 內 상벌 사항	(상벌일시와 내용 기재)		

☐ 20 년 반기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 시 : 20 . . .

신청인 : (서명)

별첨 1. 전임교원활동실적서 1부
2. 연구실적심사조서 1부
3. 연구실적심사보고서 각 편당 3부
4. 연구실적물 증빙자료 각 1부

전임교원 활동실적서

(※ 현 직급 임용기간 내 활동실적 작성)

1. 교내 보직*경력 (작성 불필요)

연번	보직명	보직기간	주요 활동 및 성과

* 보직은 학과장 이상을 말하며, 소장, 복지관장을 포함 <개정 2013.12.6.>

2. 연구소 및 위원회* 활동경력(작성 불필요)

위원회명	위원구분 (위원장/위원)	활동기간	주요 활동 및 성과

* 위원회는 TF Team을 포함

3. 학내교육프로그램 참여 실적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성과 *

* 교육성과에는 교육 후 성과(예: 강의평가 향상, 교수모형참여, 외부수상 등)를 작성

4. 산업체연수(자기계발)실적(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인정 범위 기관*)

연번	기관명	연수기간	연수성과 *

* 산업체연수 실적은 반드시 7일 이상이어야 함.
  (대학에서 인정받은 실적은 별도의 증빙제출이 없으나, 미승인 실적은 연수확인서 등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수성과에는 연수 후 성과(예: 취업실적, 산학협력체결 실적 등)를 작성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인정 범위 기관
  - 일반 산업체(산학협동 유관업체, 학생 현장실습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이상의 업체)
  -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학회 및 협회 주관(후원)의 연수
  - 전국 전문대학 학과별, 계열별 공동연수(학교 내 자체연수 제외)
  - 임용교과목과 관련된 해외연수 또는 시찰
  - 기타 연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
  - 어학계열, 인문과학계열 전공 교원들의 관련학과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

5. 정책연구과제* 참여 실적

연도	연구기간	연구원구분 (책임/공동)	참여 자수	연구과제명	연구성과 *
	~				
	~				
	~				
	~				
	~				

* 정책연구과제란 연구주제 및 성과가 학교정책 반영 등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 과제
* 연구성과에는 연구결과 학교정책 등에 반영된 성과에 대하여 작성

6. 강의평가

- 부서 자료로 활용 예정. 기재 불필요

7. 업적평가

- 부서 자료로 활용 예정. 기재 불필요

8. 연구 실적

- 학술연구재단 등록 논문 실적 200% 이상(등록 후보지 포함) 또는 학술연구재단 미등록 논문의 경우 250% 이상
- 관련부서에서 제공한 연구실적목록 양식을 우선 작성하여 제출하며, 승진자에 대하여 추후 연구실적심사보고서 및 조서제출 의뢰

9. 봉사실적

- 부서 자료로 활용 예정. 기재 불필요하며, 별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작성

연·월·일	봉사내용

10. 공적사항

- 대학 핵심성과지표 향상관련 학과 차원, 대학 차원에서의 모든 활동 및 실적을 자유롭게 기술.

11. 승진 후 활동 계획

연구실적심사조서

승진대상자 (직 급) (성명)

(서명)

구분	제목 및 내용요지	발표년월일	저자수	심사위원 평가내용			
		발표기관(지)	인정 환산율	소속	직위(급)	성명	평가 결과
논문 저서 공연 전시 中 기재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20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연구실적심사보고서

<table>
<tr><td rowspan="6">심사대상</td><td>학 교 명</td><td>수원여자대학</td><td rowspan="6">평가결과</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r>
<tr><td>학 과 명</td><td></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 rowspan="5"></td></tr>
<tr><td>직 급</td><td></td></tr>
<tr><td>교 수 명</td><td></td></tr>
<tr><td>전 공</td><td></td></tr>
<tr><td>연구실적</td><td colspan="5"></td></tr>
<tr><td>심
사
소
견</td><td colspan="7"></td></tr>
</table>

20 년 월 일

<u>연구실적심사위원</u>

소 속 :

학 과 :

직위(급) :

전 공 :

성 명 : (인)

<별표 1> 승진 평가기준표 <개정 2016.11.4.>

▣ 개인 필수이행 지표

* 20점 기준, 매년 18점 이상 충족 또는 임용기간 내 평균 18점 이상 충족(= 100점 기준 매년 90점 이상 충족 또는 임용기간 내 평균 90점 이상 충족)

구분	세부항목	내 용	점수
필수이행 지표	연구	- 현 직급 임용 기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 연구실적 200% 이상 <개정 2016.11.4.> -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 외 연구실적의 경우 250% 이상 <개정 2016.11.4.> * 연구실적 인정범위는 인사규정 별첨 참조 *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도 인정하나, 자율성과지표 영역과 중복인정은 안 됨(단, 학회 게재할 경우 연구실적 인정 가능) * 해외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승진평가 시 정성적 가점 부여	P/F
	자기계발 연수	- 전공 관련 산업체 또는 전교협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연수 현 직급 내 **7일 이상 연수**	
	위원회 활동	- 직급 내 기간 50% 이상 1인 1위원회 이상 참여	
가감지표 (14점)	수업 의무시수 준수	- 책임시수 의무 담당/ 1시수 미충족 시 1점 감점 <개정 2016.11.4.> - 고의적 미배정 시 소속 교원 연대 0.5점 감점(보직자 포함 소속 교원 모두) * 본인의 자기개발 노력 입증 못할 경우 본인만 감점	정량평가
	학내교육 프로그램 참여	- 전년도 강의평가 3.4미만 시 년 2회 이상 참여 - 미 참여 시 회당 0.5점 감점	
	전체교수회의 참여	- 미 참여시 건당 0.5점 감점 - 상급 기관의 공문이나 강의 등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봉사	- 대학 사회봉사단 참여 봉사 <개정 2016.11.4.> - 참여 건당 0.5점 부여	
학과평가 (6점)	근태 및 학과협조	- 개인필수지표 전체 점수의 30% 반영(6점) - 평가지표 세부 항목 및 배점 적용 방식은 학과에서 평가기준 마련, 학부장 승인 후 시행(학과평가 시의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시행하면 됨.) - 평가 기준은 구체적으로 증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예: 보강이 없는 수업결손 과목별 주당 -2점/ 학과행사 불참 회당 -1점) - 세부 평가항목의 실례 학과 내 교육 활동, 취업 지원활동, 학생 상담 및 지도, 산학 및 대외협력활동, 학과 회의 참여 및 기여, 학과 행사 참여 및 기여, 학과 행정 협조, 근태 및 규정 준수, 학과 발전 노력 및 제안, 교육과정 표준화, 사회봉사 등 - 배점 적용방식 : 6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을 위한 점수간격(소수 첫째자리까지 정의)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 근거 등은 학과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정성

▣ 개인 자율성과지표 (직급 내 누적 점수의 1/2 적용)

- 학과장과의 협의 하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

- 자율평가항목은 학과 내 개인 성과급 지불 기준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 적용 가능

- 부교수 승진 요건 85점 이상, 교수 승진요건 90점 이상 충족

<table>
<tr><th>영역</th><th>평가항목</th><th>평가기준 및 적용 방법</th><th>비고</th></tr>
<tr><td rowspan="4">교육영역
(35)</td><td>강의만족도
(10)</td><td>▣ 강의평가점수 평균 x 2</td><td></td></tr>
<tr><td>학생교육지도
(10)</td><td>▣ 튜터링, 멘토링, 학습조직, 동아리 등 학생 학습능력 및 취업지도
▣ 지도학생 인원에 따른 인정 비율
<table><tr><td>인원</td><td>10명</td><td>7</td><td>4</td><td>2</td><td>1</td></tr><tr><td>인정비율</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table>- 각 조직별 대상 학생의 50% 이상이 동일할 경우 중복평가에서 제외
-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구성 인원 규정을 따름
▣ 등급별 점수반영 비율
- 계획대비 달성도 평가를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등급 제시
<table><tr><td>S등급</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r><tr><td>100%</td><td>80%</td><td>60%</td><td>-</td><td>-</td></tr></table>▣ 활동 내용 별 가중치
<table><tr><td>구분</td><td>가중치</td></tr><tr><td>튜터링, 멘토링, 학습조직</td><td>0.3</td></tr><tr><td>전공/창업동아리</td><td>0.2</td></tr></table></td><td></td></tr>
<tr><td>교수모형
개발 및
사이버
콘텐츠
개발(10)/</td><td>▣ 대학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 교수모형의 경우 개발보고서 제출 혹은 교내 교수 대상 공개강의 포함
▣ 개발 관련 적용
- 평가 등급에 따른 개발 점수 인정 비율
<table><tr><td>등급</td><td>S등급</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r><tr><td>비율</td><td>100%</td><td>60%</td><td>20%</td><td>-</td><td>-</td></tr></table>- 평가등급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점수의 백분율을 환산 적용.
<table><tr><td>등급</td><td>S등급</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td></tr><tr><td>점수</td><td>95점이상</td><td>90점이상</td><td>80점이상</td><td>70점이상</td><td>-</td></tr></table>- 참여인원별 실적 인정 비율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은 1/n로 처리
- 평가방법: 외부 평가 및 연구심의위원회 평가 반영(평가 요청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적용)</td><td></td></tr>
<tr><td>개발
콘텐츠의
사이버 강좌
운영 및
개선(5)</td><td>▣ 운영
- 개발 콘텐츠의 운영 평가
- 평가 기준에 의거 년 평균 점수 적용
▣ 교수모형 입상 가점은 수상실적에서 반영
- 사이버 강좌의 경우 2016년 1학기까지의 운영실적만을 인정함.
<개정 2016.11.4.></td><td></td></tr>
<tr><td>산학협력
(35)</td><td>산학협동연구
(10)</td><td>▣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
- 국제특허 5점/ 국내특허 4점/ 실용신안 2점
▣ 정부 및 지자체 기관 지원 산학연 과제 수탁
- 건당 3점/ - 연구실적 별도 인정
▣ 산학협약에 의한 기술 이전
- 건당 3점
- 기술 이전에 따른 수입은 재정적 기여에서 다룸
▣ 외부 지원 사업 작성 제출
- 지원 규모 및 내용 평가 반영
- 1억 이하 최고 3점
- 1억 이상 최고 5점</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td><td></td><td>- 반영 비율
<table><tr><td>등급</td><td>S등급</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r><tr><td>비율</td><td>100%</td><td>60%</td><td>20%</td><td>-</td><td>-</td></tr></table></td><td></td></tr>
<tr><td>산학협력교육 과정 유치(5)</td><td>▣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공심화 과정 유치
- 1과정 당 5점(유치 주도자에게 80~100% 부여)
▣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유치 건당 2점</td><td></td></tr>
<tr><td>인턴십 유치(5)</td><td>▣ 산학연계 취업 약정에 의한 인턴십 유치
- 1인당 0.1점/ 인턴십 업체로의 취업 1인당 0.5점</td><td></td></tr>
<tr><td>재정적 기여(15)</td><td>▣ 재정지원사업 유치
- 건당 3점
- 재정적 기여 점수 별도
▣ 재정적 기여 점수
간접경비, 자본적 경비 + 장학금/기부금 + 행사유치 시 외부 지원금 + 수익사업 순이익금]
- 100만원당 0.5점, 최대 15점까지 부여</td><td></td></tr>
<tr><td rowspan="4">봉사영역 (30)</td><td>정책과제 수행(10)</td><td>▣ 참여 비율별 배점
<table><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r><td>참여 비율</td><td>100 %</td><td>100% 미만~ 80%이상</td><td>80%미만~ 60%이상</td><td>60%미만~40%이상</td><td>40%미만 ~20% 이상</td></tr></table>-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은 1/n로 처리
▣ 평가 등급별 가중치
- 정책연구는 연구심의위원회, TF팀 및 외부보고서의 경우 관련 부서 혹은 기획회의에서 평가
- 정책과제 제안 혹은 학교 발전과제 제안 시 관련 부서에서 이를 평가하여 기획회의에 보고하여 평가
<table><tr><td>등급</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가중치</td><td>1.2</td><td>1</td><td>0.5</td><td>-</td><td>-</td></tr></table></td><td></td></tr>
<tr><td>봉사(5)</td><td>▣ 대학 사회봉사단 참여 봉사 참여 회당 0.5점</td><td></td></tr>
<tr><td>학과지정 자율평가 항목 (10)</td><td>▣ 학과발전을 위한 성과창출 항목
- 학과장과 협의 후 학부장 승인 하에 결정</td><td></td></tr>
<tr><td>수상(5)</td><td>▣ 대외 수상 실적
- 대통령상 5점
- 장관상 국제단체 수상 3점
- 기타 국가 공공기관 및 전문대학협의회 수상 1점</td><td></td></tr>
<tr><td>기타 가점영역 (20)</td><td>보직 및 위원회 활동</td><td>▣ 등급별 배점 적용 비율
<table><tr><td>등급</td><td>S등급</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r><tr><td>비율</td><td>150%</td><td>120%</td><td>100%</td><td>70%</td><td>40%</td></tr></table>▣ 보직별 반영 가중치
<table><tr><td>보직명</td><td>가중치</td></tr><tr><td>연구소장</td><td>30%</td></tr><tr><td>학과장</td><td>40%</td></tr><tr><td>소장(센터장), 학부장, 평생교육원 원장,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개정 2013.12.6., 2016.11.4.></td><td>60%</td></tr><tr><td>사회봉사단 단(부단)장, 학보방송국 주간, 관장</td><td>50%</td></tr><tr><td>주요 위원회(A등급) 위원장</td><td>30%</td></tr><tr><td>일반 위원회 위원장</td><td>10%</td></tr><tr><td>주요 위원회(A등급)</td><td>20%</td></tr><tr><td>일반 위원회(B, C등급)</td><td>5%</td></tr></table></td><td></td></tr>
</table>

		* 점수환산: 20X등급비율X반영비율 * 보직 평가는 <년 단위 평가점수x수행 년수>로 산정하며, 겸직일 경우 상위보직 점수로 산정한다. * 위원회 평가 시 당연직 위원회는 평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점수는 <년 단위 평가점수x수행 년수>로 산정하고, 년 2개까지만 상위점수로 반영하며, 3개 이상 시 취득점수에 <B등급 이상 초과되는 위원회 수x 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 위원장과 위원회의 등급은 년 말 업무량에 따라 등급 조정 * 3개월 이상의 TFT 인 경우 위원회로 평가 반영 * 보직을 겸직할 경우 상위 보직 점수를 적용하되, 겸직하고 있는 하위 보직 직급 점수의 30%를 추가 반영 * 처장은 총장 평가에 따른 비율을 승진 사항 100% 적용 <개정 2013.12.06.>	

<별표 3>

교원인사위원회 승진임용 평가표

20 학년도 (상, 하)반기

피평정자	소 속		평정자	소 속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서명)
승진심사 신청서			제출	미제출	

구 분	평정요소		평가		근거
			적합	부적합	
연구실적물	논문	1) 현 직급 임용 기간 내 학술연구재단 등록 논문 실적 200% 이상(등록 후보지 포함) 2) 학술연구재단 미등록 논문의 경우 250% 이상			
	공연/연주/전시 등	1) 현 직급 內 개인발표 100%를 포함하여 200% 이상 2) 개인발표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실적물 250%이상 ※ 모든 공연/연주/전시는 전문 연주홀 또는 전문 전시장에서 발표되어야 함.			
	교재	수업 교재로 사용 여부			
자기계발 연수	전공 관련 산업체 또는 전교협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연수 실적				
위원회 활동	직급 내 기간 50% 이상 1인 1위원회 이상 참여				
가감지표 취득점수	매년 18/20(또는 90/100)점 이상 또는 임용기간 내 평균 18/20(또는 90/100)점 이상				
자율성과지표 취득점수	부교수 승진	현직급 평균 개인 자율성과지표 취득 점수의 1/2이 85점 이상			
	교수 승진	현직급 평균 개인 자율성과지표 취득 점수의 1/2이 90점 이상			
종합의견					

<별표 4>

교원인사위원회 승진임용 평가표

(2012년 발표 세칙 적용 이전 기준표)

20 년 (상, 하) 반기

* 개인활동실적서에 작성된 내용 중심으로 평가

피평정자	소 속	{{학과명}}	평정자	소 속	{{소속}}
	직 급	{{현직급}}		직 급	{{직급}}
	성 명	{{교수명}}		성 명	{{성명}} (서명)

구 분	평정요소	평가					비 고
		A (10)	B (8)	C (6)	D (4)	E (2)	
1. 교수로서의 자질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2. 연구실적	연구실적						
3. 강의평가	강의평가 (현 직급 임용기간 전체)						가중치 200%
4. 교육활동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						가중치 200%
5. 봉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대학발전 공헌도 (보직 및 위원회 활동, 정책과제 수행 등)						
6. 근무태도	학교 근무태도						
7. 공적 사항							
8. 승진 후 활동 계획							
합 계							
종합의견	* 평정 근거 중심 기술						

<별표 5> 특별 승진 대상자 총장 추천서

특별승진 대상자 총장 추천서

① 교 수 명			
② 직 급		③ 소 속	
④ 공적분야		⑤ 공적기간	
⑥ 공적 사항 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총 장 (서명)			